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1994. 1. 27.
- 교육사회위원회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 1994년 1월 19일
3. 제 안 이 유
  -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 진흥비의 사업 종료(실적) 보고방법을 개선하여 사학의 자율성 신장,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 재정결함액의 사업종료(실적) 보고방법 개선
    - 현행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보고를 받음
    - 개선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보고시 학교의 재정수요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함.

## 5. 검토 의견

### ○ 먼저 관계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맞지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보조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 ○ 한편 신설된 제8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준재정수입액(세입)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되, 회계년도말 집행현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 보고를 받던것을, 학교의 재정수요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한것은, 자율화시책에 부응하여 작은부분인 운영비에 대해서 부터라도 사학의 자율성 신장은 물론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보고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게 되면 운영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